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역학조사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검체(檢體)도 역학조사의 내용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,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청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대상자의 대리인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구축·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17. ~ 10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 중 “특별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“특별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되어야”를 “포함돼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감염병”을 “검체(檢體) 등 감염병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령”을 “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보건복지부령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(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)”으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운영”을 “구축·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·운영 등) 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.	제1조의2(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-----특별시·통합특별시----------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·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, 자료제출 요청,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질병관리청장”은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, “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”는 “시·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”로 본다.	⑦ ----------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----------.
제12조(역학조사의 내용) ① 법	제12조(역학조사의 내용) ① ----

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----- -- 포함돼야 ----------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	5. ----- 검체(檢體) 등 감염병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1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)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31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보건복지부령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출해야 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통보해야 ----. ---------- ----------
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	---------- 사람(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)-- 통보해야 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	2. ---------- 구축·운영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130